지식경제부공고 제2011-588호

「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1월 22일

지식경제부장관

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기능10급 공무원 계급 폐지, 공무원 채용 상한 연령 폐지, 직원의 공개채용 강화 등 정부의 인사관련 정책을 반영하고,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및 환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임용, 복무, 징계, 보수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**집배10급 계급을 폐지**하고, 현 근무자가 단계적 승진 가능토록 적용 특례 신설(안 제4조 별표1, 부칙 제1조, 제2조)

나. 직원 **채용 상한 연령을 폐지**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(안 제7조)

1) 사무원은 18세 이상

2) 집배원은 18세 이상

다. 직원 채용 시 공개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, 시험 실시 기관을 상향 조정하여 **채용의 투명성 확보**(안 제3조제1항)

1) 기존 : 총괄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정우체국장이 공개 채용

2) 변경 : 지방우정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별정우체국장이 임용

라. 법에서 위임된 **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절차 규정** (안 제16조의6, 제16조의 7 신설)

1)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,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

재임용되는 경우, 초과지급의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환수고지서 및 정산고지서 발행

2) 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따름

마. 신규 임용, 신원 보증에 필요한 **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지 않고** 전자정부법에 의한 **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**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

바. 급여 인상에 따라 **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 봉급액의 81%에서 68%로 하향 조정** (안 제16조의3제1항, 제16조의8제3항)

사. **모성보호, 공무상 질병에 관한 휴직제도 개선**(안 제22조제2항제1호, 제22조제3항제1호)

1) 육아휴직 대상 자녀 상한 연령 확대(만 6세→ 만 8세)

2) 공무상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(1년→3년)

아. **연가일수**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및 **적용방법 개선** (안 제27조제2항제1호, 제27조의3제1항)

1)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모두를 산입

2)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

자. **공가**를 부여할 수 있는 **범위 확대**(안 제29조)

1)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

2)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

3)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
4) 올림픽,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

차. **모성보호,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개선** (안 제30조 제8항, 제9항)

1) 여성 직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5일, 28주 이상은 최장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, 총 5단계로 확대 (현행은 임신기간 16주 이상인 경우 30일, 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까지 3단계 부여)

2) 인공수정, 불임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 신설

카. 일부 **경조사 휴가일수**를 현실에 맞게 **조정**함(안 제30조 제1항 별표6, 제31조)

1) 본인결혼 : 7일→5일, 자녀결혼 : 0일→1일, 배우자출산 : 3일 →5일, 형제자매사망 : 0일→1일, 입양 : 0일→ 20일

2)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토·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

타. 징계 규정에 **강등 처분**을 **신설**하고, 징계 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(안 제36조제1항, 제36조제3항, 제37조, 제38조)

1) 중징계 해당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지방우정청으로 상향 조정

2) 징계 의결 요구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

파.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, 횡령, 유용의 경우 5배내의 **징계부가금 부과규정 신설**(안 제36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법령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[참조 :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,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종로6(서린동 154-1), 우편번호 : 110-110, 전화 : 02-2195-1513, 팩스 : 02-2195-1529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) “정보마당/관련법규/입법예고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